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953

발의연월일: 2023. 5. 11.

발 의 자:이태규·김선교·권명호

김희곤 • 윤창현 • 김정재

지성호 · 양금희 · 엄태영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,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고 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.

2023년 1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.5%에 달하고, 교원 86%가 학생의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.

또한,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,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

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,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 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20조 의2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096호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는 한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096호 초·중등교육법	법률 제19096호 초·중등교육법		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		
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	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		
학생생활지도) (생 략)	학생생활지도) ① (현행 제목		
	외의 부분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		
	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		
	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		
	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부		
	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		
	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.		